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40
----------	------

2021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찬성자 11명)
- 나. 발의일자 : 2021년 8월 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라.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9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김소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디자인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시책 및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1호).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가. 개정안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통합 관리’를 시장의 책무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포함하려는 것임.
- 동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은 일반 시민을 위하여 서울시,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의 디자인 정책흐름은 건설과 산업, 기능과 효율, 자동차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이 우선시 되는 하드시티(Hard City)에서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간과 문화와 디자인이 중심이 되는 소프트시티(Soft City)로 거듭나기 위해 시작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 서울디자인 정책의 흐름 현황 >

구분	서울디자인제1기 (2007년5월~2009년 5월)	서울디자인제2기 (2009년6월~2011년 10월)	서울디자인제3기 (2011년11월~2014년 6월)	서울디자인제4기 (2014년7월~현재)
비전	하드시티에서 소프트시 티로	시민고객을 배려하는 디 자인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 시(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시민디자인)	시민중심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전략원칙	건설과 산업 기능과 효 율 → 문화와 디자인 중 심	시민고객 우선 디자인→ 시민중심디자인 개선→ 디자인산업육성	생활디자인 커뮤니티디자인	시민 우선 디자인 비우 는, 통합하는, 더불어 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 인
대상 및 접근방법	도시(City) 개선(Soft)	시민(Citizen) 배려(Caring)	시민 삶의 질 참여와 소통	소통 신뢰
성과	디자인정책 기반 마련	국제적 위상 강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디자인 도입	시민 문화권 보장

- 디자인정책과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  
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비  
롯하여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기본계획(2020)’,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2020)’,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6)’ 등을 수립하여 서울시 정책 및 사업방향과 실  
행과제 및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 < 서울시 정책 및 사업별 계획 현황 >

구분	연구 자료	비고
공공 디자인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기본계획(2020) 서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2019)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2020)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6)	정책 및 사업방향 실행과제 및 핵심과제 제시 가이드라인 제시 (디자인개발 및 사업운영)
정책	중장기 디자인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연구(2015)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2017)	민선7기 디자인 정책 및 사업 운영방향
조례 및 규칙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2019)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2020)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2020)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2019)	디자인 정책 실행을 위한 기본 지침 *조례 간 중복성, 위계정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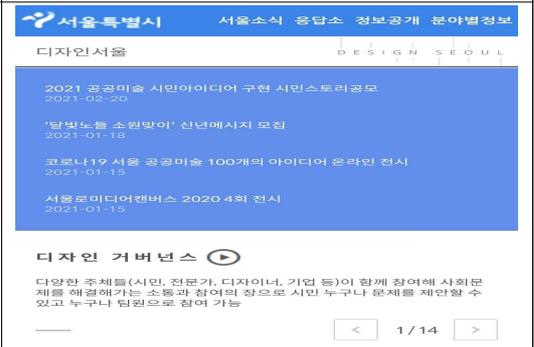
서울디자인재단 내 디자인R&D센터는 적용완료된 ‘서울시 디자인 정책 4개년 계획(2017~2021)’이후 서울 디자인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연구(150백만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공공디자인 관리 이력을 보면 서울시는 공공디자인 사업팀, 공공디자인진흥팀,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생활안심(범죄 예방)디자인,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인지건강 디자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디자인거버넌스,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조성,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 총 12개의 디자인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총 60개의 디자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디자인들은 3개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심의지원시스템은 최근 게시물이 2011년 업무계획이고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담당부서로 명시되어 있어 활용되지 않는 사이트로 보임.

### < 디자인정책과 사업별 홈페이지 현황 >

연번	사업명	사이트
1	공공디자인심의지원시스템	

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3	<p>디자인서울(디자인거버넌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미술 프로젝트</li> <li>·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li> <li>· 도심속의 공공미술 산책</li> <li>· 디자인정책자료실</li> <li>· 유니버설디자인</li> </ul>	

○ 집행부는 2022년 공공디자인심의지원시스템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두 개의 사이트를 고도화 및 통합 구축할 예정으로 예산(19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디자인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기존에 가시적인 환경디자인 개선에서 시민들에게 진정한 공공의 삶과 가치를 영위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공공디자인의 홍보 예산의 중복, 투자, 기존에 제작된 공공디자인의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공공디자인의 통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동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를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키고 디자인 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4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05일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정태, 김종무,  
김태호, 김화숙, 노승재,  
문병훈, 오한아, 이호대,  
장인홍, 황규복 의원(11명)

## 1.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디자인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시책 및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가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진흥과”를 “진흥 및 통합관리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진흥”을 “진흥 및 통합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디자인의 <u>진흥과</u> 공공디자인의 품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 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진흥 및 통합관리와</u>----- ----- -----</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p> <p>1. 공공디자인 <u>진흥</u>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공공디자인 <u>진흥 및 통합관리</u>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p>